

규제영향분석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목 차>

1. 변리사 실무수습

특허청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변리사 실무수습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특허청	작성 자	이름	여덕호
	담당부서 (과)	산업재산인력과		직급	4급
	국장	김태만		연락처	042-481-5187
	과장	이춘무		이메일	dhyeo@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변리사법 시행령 제12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예비 변리사(연간 1,700여명) 이해관계자 : 출원인, 변리사, 변호사 등 관련 부처 : 법무부, 교육부				
5.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변리사실무수습은 출원인의 신뢰 확보 및 변리사 자격제도에 필수적인 제도로 존속이 필요하며, 변리사법에 근거 조항이 존재하여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6.1.27.)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 등을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실무수습 이수 (변리사시험합격자 및 변호사자격자)</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실무수습 이수완료시, 변리사 자격부여(특허청)</div> </div> </div>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6.1.27.)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 등을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

<변리사법 시행령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u>집합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한다.</u></p> <p>② <u>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제지식재산연수원</u> 2.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u> 나. <u>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u> 다. <u>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u> 라. <u>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u> <p>③ <u>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u> 2. <u>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u>

	<p>한), 법무조합</p> <p>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p> <p>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p> <p>1.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p> <p>⑤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	--

<변리사법 시행규칙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조(집합교육)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p> <p>②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특허</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u>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집합 교육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u>제3조(현장연수) ①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u></p> <p><u>② 현장연수기관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p> <p><u>③ 특허청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u></p> <p><u>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p>

[별표]

집합교육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과목 구분		내용	이수 시간
공통 과목	소양 교육	변리사법 제도, 직업의 이해,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등	10시간 이상
	산업재산권법 실무	국내법 제도 및 판례, 외국법 제도, 국제출원 제도 등	50시간 이상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국제출원, 선행 기술 검색 등	120시간 이상
선택 과목	심판·소송 실무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 국제 분쟁, 협상 및 계약 등	70시간 이상
	과학기술의 이해	자연과학 개론, 산업기술 동향 등	70시간 이상

비고

1. 실무수습 대상자는 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2.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심판·소송 실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과목 중 과학기술의 이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변리사 현장연수 확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자)	
	(영문)	전화번호	
주소			

현장연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개월 일)
현장연수 주요내용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자격 취득 근거	<input type="checkbox"/> 「변리사법」 제3조제1호(년도 제 회) <input type="checkbox"/> 「변리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	---

현장연수기관	현장연수기관 주소
현장연수 지도관	(서명 또는 인)

「변리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신청인의 현장연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장연수기관 귀하

위 신청사항을 확인합니다.

현장연수기관장



1. 규제 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

-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들도 일정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

* 국회 본회의 통과('15.12.31), 공포('16.1.27), 시행('16.7.28)

- 개정 변리사법에서 변리사 실무수습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실무수습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해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의 개정이 필요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개정 변리사법(제3조)은 실무수습을 하위법령에 위임

- 변리사 실무수습이 기존에는 변리사의 등록 요건이었으나,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의 자격 요건으로 변경되고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함
- 변리사 실무수습이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반 출원인이 특허 등을 출원할 때 변리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제·개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

- 변리사법 하위법령에 위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기관 등 세부사항을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변리사 자격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정부) 합리적 실무수습 도입으로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

- 변리사법 개정·공포·시행에 맞추어 법에서 위임된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

- 실무수습이 면제되었던 변호사 등도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여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 및 변리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 (변리사)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 변호사도 산업재산권법 실무, 과학기술의 이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등을 교육받도록 하여 모든 변리사가 변리업무에 수행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변리사로 활동하므로 출원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출원인) 변리사 자격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변리 서비스의 다양화로 편익 증대

-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리사가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일반 출원인의 신뢰성 확보 가능
- 다양한 출신의 변리사로 인해 출원인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변리사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화가 가능
- 변리사가 부족한 지역에 변호사 등이 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출원인의 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지역별 개업 변리사 분포('15.12) : 서울 3,426명(82.6%), 경기 233명(5.6%), 대전 137명(3.3%), 기타 350명(8.5%)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과 같이 1년간 실무수습 이수 >

- 현행 변리사법 시행령은 1년의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
 - 개정 변리사법(제3조)은 기존 변리사 시험 합격자 이외에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자격 취득을 위해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규정
 - 현재와 동일한 실무수습을 적용할 경우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 취득까지 기간이 길어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내용 및 기간이 과도하여 변리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불가

< 비규제대안 : 실무수습의 민간 자율 운영 또는 면제 >

-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특허청경력자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하며,
 - 변리사 시험, 변호사 등 예비 변리사의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 내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
- 변호사는 변리사법 개정 이전에 실무수습을 받지 않고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 개정 변리사법은 모든 예비 변리사에게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은 실무수습의 면제는 불가

< 규제대안 1 : 변리사 실무수습을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분 실시 >

- 변리사 자격획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집합교육(250시간), 현장연수(5개월)로 구분하여 실무수습의 내용을 규정
 - 집합교육은 공통항목(① 직업윤리, ② 산업재산권법 실무, ③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과 선택항목(④ 심판·소송 실무, ⑤ 과학기술의 이해)으로 구성함

-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통항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 선택항목 중 하나 이상을 선택·이수하여 총 2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심판·소송 실무'를, 비이공계 출신 변호사 자격자는 '과학기술의 이해'를 필수적으로 선택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변호사도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수습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 다만, 일반 출원인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 제도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실무수습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등록 요건에서 자격 요건으로 변경되었으며, 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집합교육'을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교육 과정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민간 기관의 자율성·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변리사 실무수습을 운영할 예정

< 해외사례 분석 >

- 해외 주요 국가는 변리사 관련 법률, 시장 상황,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각 국가의 운영 방식은 다양하나 출원인이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운영
- 일본의 변리사 자격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실무수습 이수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
 - * 출원 서류 작성 등 변리사의 사무능력 담보를 위해 변호사, 특허청 경력자 등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변리사법 개정('07)
- 실무수습은 144단위(1단위당 30분)로 총 72시간의 교육을 이수
- 특허청,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사람, 변호사 등은 실무수습의 일부를 면제
- 변호사는 변리사법 및 변리사의 직업윤리(8시간) 수강으로 실무수습을 완료

< 일본의 변리사 실무수습 내용 >

구 분	온라인	이론수습
변리사법 및 변리사의 직업윤리	16단위	-
특허 및 실용신안 이론/실무	27단위	30단위
의장 이론/실무	12단위	12단위
상표 이론/실무	18단위	12단위
조약, 기타 변리사에 대한 이론/실무	17단위	

- 미국은 특허청을 대상으로 출원·심판 대리 업무를 하는 특허대리인(patent ag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도 특허대리인 시험에 합격해야만 특허출원 대리 업무 가능
 - 변리사, 특허변호사는 시험 합격 후 별도의 실무수습 과정이 없음
- ※ 미국 Patent Agent는 특허청에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관식 시험만을 거쳐 선발하는 자격사로, 심결취소소송 대리권한이 없는 등 한국, 일본의 변리사와 지위 및 권한이 다름
-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계 국가는 변리사 시험 응시 및 자격 취득

- 요건으로 2~3년의 지식재산권 분야 연수 또는 실무경력을 요구
- 변리사 시험 응시 자격으로 실무 능력이 일정 이상 검증된 것으로 보아 시험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실무수습 과정은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 타 자격사는 실무수습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변호사 제외)하고 있으며, 집합교육과 사무소 등의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

구 분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합격자수	1500명선 (사사제외)	630명	90명	120명	850명	250명
실무수습기간	6월	집합1월 실무 5월	집합1월 실무 5월	집합3주 실무 9주	1년(등록) 2년(외부감사) (인터넷교육 100시간)	집합1월 실무 5월
실무수습비용	-	20만원	45만원	50만원	52만원(회차당)	72만원

-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제3조)하고 있으나 세무사 관련 별도의 실무수습이 없음
- 자격사의 실무수습은 해당 자격사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공인노무사는 인력관리공단 산하 대학(2곳)에 추가로 위탁·운영
- 타 자격사는 공무원 외에 사전 교육 및 경력에 따른 실무수습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공무원 외에 관련 업계 또는 업무 종사 경력을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으로 규정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자의 자격사 취득을 유도
 - * 공인회계사 : 대학, 은행, 기업 등에서 회계 업무 경력자는 1차 시험 면제
 - 공인노무사 : 노조 전임자, 노무관리 전담자 등은 1차 시험 일부 면제

< 위임근거 검토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 제3조('16.1.27.자 공포)에 실무수습 규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산업위 위원들은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최소한의 실무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시행령에 위임토록 의결('15.11.19)

< 이해관계자 협의 >

- 변리사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주요 이해관계인 및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주요 이해관계인 의견>

변리사회 : 변호사는 1년2개월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포함하여 2년의 실무수습이 필요

변호사협회 : 변호사의 실무수습은 2개월의 이론교육으로 충분하며, 변호사의 실무수습은 변호사협회가 주관

로스쿨 :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은 변호사가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것과 변리사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16.3.10)
 - (참석) 변리사회 3명, 변호사협회 3명
 - (변리사회)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회가 주관
 - (변호사협회)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은 변호사협회에서 수행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1차 토론회 ('16.3.17.)

- (참석) 변리사, 변호사, 변리사 수험생, 로스쿨 재학생 등 100여 명
- (변호사협회)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의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집합교육 형태로 2개월의 실무수습 제안

※ 토론회 발표 대상은 변리사회, 변호사협회였으나, 변리사회는 발표 거부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토론회 ('16.4.1.)

- (참석) 변리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학생, 기업관계자 등 90여 명
- (변리사회) 변호사는 총 24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수습을 주관
- (변호사협회) 특허 명세서 작성 등의 교육은 필요하나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실무수습은 2개월의 집체교육으로 충분
- (로스쿨) 로스쿨 취지·교육목적·교육내용과 실무수습의 연계 모색이 필요하며, 중복되는 교육은 집체교육에서 제외
- (기업) 실무수습을 기존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책연구소) 수요자인 기업·연구원 등의 의견 반영이 필요

○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산업통상미래정책관)에 특허청-법무부 이견 조정 요청 및 1차 조정회의(6.10) 개최

- 특허청과 법무부는 치열한 토론 끝에 ① 국회의 논의 경과, ② 변리사회, 변호사협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③ 실무수습의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간을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과 최초 변리사 업무 개시에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에 합의

<주요 합의사항>

구분	합의 내용
이론교육 시간	▪ 모든 대상자가 250시간 이수
현장연수 기간	▪ 모든 대상자가 5개월 수습
이론교육 기관	▪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

<이론교육 세부내용>

구분	내용	시간	
공통	직업윤리	변리사법 제도, 직업의 이해, 기업의 IP 전략 지원 등	10
	산업재산권법 실무	국내법 제도 및 판례, 외국법 제도, 국제출원 제도 등	50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국제출원, 선행기술 검색 등	120
선택	심판·소송 실무	심결취소·침해소송, 국제 분쟁, 협상 및 라이선싱 등	70
	과학기술의 이해	자연과학 개론, 산업기술 동향 등	70

- 선택 중 비이공계 출신 변호사는 과학기술의 이해를 필수로, 변리사 시험출신은 '심판·소송 실무'가 필수로 이수해야 함
- 특히, 이번 변리사법 개정 전 변리사 자격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 논의와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
- 특허청은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변리사 자격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총 16회 회의, '12.11~'13.4)
 - * 학계(4명), 산업계(4명), 변리사(4명), 변호사(4명) 등 12명으로 구성
- (경과) 공청회('13.5.31), 관계부처·기관 의견문의('13.7), 입법예고('13.9~10) 등 총 37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마련

<'13년 변리사 자격 관련 합의 내용>

변호사의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재권 과목을 이수하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 사전경력 인정
시험면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지재권 관련 업무 전담자에 대해 1차 시험과목 일부(산업재산권법) 면제 일정 학점 이상의 이공계 과목 이수자에 대해 1차 시험과목 일부(자연과학개론) 면제

-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13.9)에 대한 관계부처 반대로 정부안의 수정을 위해 지재위·법무부·변협·변리사회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변리사 자격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14.3~10)하였고, 대한변리사회 임원진과 수정안에 대한 논의('15.1)

< 변리사법 전부개정안('15.2월 입법예고안) 중 자격 관련 내용 >

변호사의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는 지재권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 변리사 자격 부여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재권 과목을 이수하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하여 합격
---------------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대상이 기존의 변리사시험 합격자에서 변호사 등으로 확대
 - 기존의 실무수습 관련 규정으로는 다양화된 예비 변리사에게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건의 실무수습을 시행할 수 없음

< 결론 >

- 개정된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일반 출원인의 변리사에 대한 신뢰 확보, 변리 서비스의 다양화로 편익 증대 등

실무수습의 추진 방향에 적합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16.1.27 공포) 제3조에서 변리사의 실무수습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 근거가 명확함
- 변리사 실무수습에 대해 변리사, 변호사, 로스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실무수습 안을 마련
 - 실무수습을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하고, 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 요건을 보완
 - 변호사도 산업재산권법 실무, 과학기술의 이해 등을 교육받도록 하여 모든 예비변리사가 필요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토록 규정
- 다양한 실무수습 담당 기관을 인정하여 민간의 노하우 및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인 실무수습 운영이 가능
 - * 이론교육기관 :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
 - 현장연수기관 : 변리사사무소, 법률사무소,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 공공 기관 등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현행과 같이 1년간 실무수습 이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3,000		3,000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000		3,000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변리사 실무수습을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분 실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1,068.34	-1,931.66	3,371.56	3,371.56	-2,303.22	-5,303.22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4,840.52	4,840.52	-4,840.52	-4,840.52
정부		1,432.34	1,432.34	600	600	832.34	832.34
총 합계		2,500.68	-499.32	8,812.08	8,812.08	-6,311.4	-9,311.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현행과 같이 1년간 실무수습 이수>

① 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 3,000백만

(정량)제목	변리사 실무수습 비용
금액	3,000,000,000
산식	150만원 (1회) * 200
근거설명	변리사 실무수습 중 집합교육 비용 : 150만원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규제대안 1 : 변리사 실무수습을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분 실시>

① 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 1,068.34백만

(정량)제목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비용
금액	1,068,347,408
산식	[평균 실무수습 시간(250)*시간당 이수비용(4,000원)*대상자수]
근거설명	1. 변리사 실무수습의 시간당 이수비용(4000원)=659,500원/168시간 [참고] 제47회 변리사 합격자 실무수습(2010년) 중 이론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에서 1개월(168시간)간 진행되었으며, 교육생은 교육비를 개별 부담

- 총액 : 659,500원
- 교육비 : 412,000원
- 식비 : 4,950원 × 50식 = 247,500원

2. 실무수습 참여 변호사 수

-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581명이며, 매년 1,500명 이상을 선발
- 사법고시 합격자 수 : '14년 204명, '15년 153명, '16년 100명(예정)
- * 사법고시 합격자는 매년 11월 발표하고,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다음 연도 3월부터 2년간 실무연수 후 변호사 자격 부여
- ** 사법고시는 '18년부터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
- 특허 등 기술 관련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변리사 업무의 특성상 이공계 출신의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할 것으로 예상됨
- 로스쿨의 이공계 출신 비율은 8.04%(2015)이고 매년 8%내외이므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이공계 출신은 약 130명임
- 변리사법 개정 이전의 경우 변호사는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체 변호사 중 25%가 등록을 하였으나, 변리사법 개정으로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실제 변리업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여 대상자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
- 전체 변호사에서 개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6%로 이공계 출신의 변호사가 대다수인 것으로 판단
- * 변호사 중 변리사 등록 및 개업 : 등록 5,081명, 개업 1,231명('16.4, 특허청 내부 통계)
- ** 변호사 수 : 개업 17,538명, 휴업 및 미개업 3,177명 등 총 20,715명('16.3,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고시 합격자 중 이공계 출신은 로스쿨 이공계 출신 비율을 적용하여 '14년 16명, '15년 12명, '17년 8명 등으로 예상
- ※ 변리사 시험 합격자(200명) 중 비이공계 출신은 3% 미만임(변리사 시험 인문계 출신 합격자 수 : 3명('14), 5명('15))
- 그러므로 변호사 중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을 인원은 146명('17), 142명('18), 138명('19), 130명('20~)으로 예상

3. 변리사 실무수습 중 집합교육 시간

- 변리사 실무수습 중 집합교육은 총 250시간임.
- 집합교육은 공통항목(① 직업윤리, ② 산업재산권법 실무, ③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과 선택항목(④ 심판·소송 실무, ⑤ 과학기술의 이해)으로 구성

4.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집합교육 시간의 추가가 없음

- 기존 변리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중 집합교육은 2개월간

	<p>250시간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론교육의 추가는 없음</p> <p>5. 변리사 실무수습 중 현장연수 비용</p> <p>- 변리사 실무수습 중 현장연수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변호사가 특허법인, 법률사무소,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상태에서 수행하므로,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p>
--	---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

□ 편익 : 3,371.56백만

(정량)제목	변리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급여 상승
금액	3,371,564,150
산식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평균 연봉 증가 금액 (360만 원)* 변리사 자격 취득자 수(130명 내외)

근거설명	<p>○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 취득에 따라 연봉 상승을 추산</p> <p>-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변리사 사무소, 법률 사무소 등에서 자격 취득에 대해 월 평균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예상되어 연봉으로는 360만원 상승</p> <p>○ 변리사 연봉 상승 산정 근거</p> <p>- 변리사 자격자에 대한 자격증 수당 조사 결과 민간 기업은 50만원, 지자체는 20~50만원을 지급</p> <p>* 민간기업의 변리사 자격 수당은 50만원(월)으로 조사(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10.12, 행안부)</p> <p>** 지자체 고문변리사 수당 관련 조례 : 철원군 50만원(월), 안성시 30만원(월), 파주시 30만원(월), 경기도 20만원 + 업무에 따라 10만원 추가</p> <p>- 변호사는 변리사 실무수습(약 1년)을 받은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변호사 중 변리사 취득 인원은 146명('18), 142명('19), 138명('20), 130명('21~)으로 예상</p>
------	--

(정성)제목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분석	변호사도 집합교육(250시간) 및 현장연수(5개월)를 이수하여

	변리사로서의 전문성 강화
--	---------------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수습을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산업재산권법 실무, 출원 실무, 심판소송 실무, 과학기술의 이해 등으로 내용을 정하고, ○ 변호사도 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변리사로 활동하므로 출원인에게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4,840.52백만

(정량)제목	지역 소재 기업의 변리사 접근성 강화
금액	4,840,529,692
산식	<p>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특허 등 지역 기업 등의 출원·심판 대리 건 * 원거리 출장 횟수(출원·심판 별 차등) * 원거리 출장비용(47,400원)</p> <p>* 출장 횟수는 권리, 출원·심판에 따라 횟수 산정</p>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재 기업, 개인 발명가의 변리사 접근성 강화로 그간 변리사 상담을 위한 원거리 출장에 따른 손실액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변호사 중 변리사 등록자는 특허침해소송 등을 주로 대리하였으나,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가 출원·심판 대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 개업 변리사 수 : 수도권 3,703명(89.3%), 지역 443명(10.7%)('15.12, 특허청 내부 통계) - 지역별 개업 변호사 수 : 수도권 14,452명(82.4%), 지역 3,086명(17.6%)('16.3, 변호사협회 통계) - 기존 변리사 이외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지역에 추가로 개업을 하여 지역 출원인의 접근성 강화가 예상 ○ 출원 통계('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210,292건, 실용신안 9,184건, 디자인 64,345건, 상표 150,226건 ○ 심판 통계('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계 6,263건, 당사자계 1,072건
------	--

- 변리사 1인당 연평균 업무 처리 건수
 - 변리사 1인당 평균 출원 대리건('14)
특허·실용신안 : 53건, 상표 : 35건, 디자인 : 15건
 - 변리사 1인당 평균 심판 대리건('14)
결정계 : 1.5건, 당사자계 0.26건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재산권 출원 : 114,807건('14)
 - 수도권 이외 지역의 특허 출원 : 58,172건('14)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상표, 디자인 출원 : 56,635건('14)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당사자계 심판 청구 건 : 1,200건('14)
 - * 전체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 청구 건 (3,609건, '14) 중 수도권 이외 지역의 청구 건 통계는 없으나,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중 지역 비중에 대응하는 1/3로 가정
 - ※ 특허거절결정 불복 심판 등 결정계 심판은 특허출원의 과정의 연장선으로 추가적인 출장 상담이 불필요

- 지역에 개업한 변호사의 변리사 개업으로 지역 기업 등의 변리사에 대한 접근성이 매년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매년 실무수습을 받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중 17.6%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역에서 개업할 것으로 예상
 - * 지역에 개업하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수(예상) : 26명('18), 25명('19), 24명('20), 23명('21~)
 - 지역에 개업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연간 출원·심판 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
 - * 변리사 1인당 대리 건수 * 지역 개업 변호사 수

<지역에 개업한 변리사의 연간 예상 대리 건수>

	'18	'19	'20	'21	'22	'23	'24	'25	'26
특허·실용신안	1378	2703	3975	5194	6413	7632	8851	10070	11289
상표	910	1785	2625	3430	4235	5040	5845	6650	7455
디자인	390	765	1110	1455	1800	2145	2490	2835	3180
심판(당사자계)	7	13	19	25	34	43	52	61	70

- 특허출원 등 상담을 위해 변리사 또는 기업 관계자가 원거리

	<p>출장으로 인한 비용 : 교통비 47,400원(서울-대전 KTX 왕복요금으로 평균)</p> <p>○ 원거리 출장 횟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출원 : 1.5회(특허출원 전 상담 1회, 의견제출통시서 대응시 0.5회 가정) - 상표, 디자인 출원 : 1회(상표, 디자인 출원 전 상담 1회) - 심판 청구 : 5회 <p>(청구인 : 심판 청구 전 1회, 심리 단계 1.5회, 피청구인 : 심판 청구 후 1회, 심리단계 1.5회)</p> <p>○ 지역 출원인의 편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특허 등 지역 기업 등의 출원·심판 대리 건 * 원거리 출장 횟수 * 출장 비용 * 출장 횟수는 권리, 출원·심판에 따라 횟수 산정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 기업 등의 연간 예상 편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18</th> <th>'19</th> <th>'20</th> <th>'21</th> <th>'22</th> <th>'23</th> <th>'24</th> <th>'25</th> <th>'26</th> </tr> </thead> <tbody> <tr> <td>특허·실용신안</td> <td>1378</td> <td>2703</td> <td>3975</td> <td>5194</td> <td>6413</td> <td>7632</td> <td>8851</td> <td>10070</td> <td>11289</td> </tr> <tr> <td>상표</td> <td>910</td> <td>1785</td> <td>2625</td> <td>3430</td> <td>4235</td> <td>5040</td> <td>5845</td> <td>6650</td> <td>7455</td> </tr> <tr> <td>디자인</td> <td>390</td> <td>765</td> <td>1110</td> <td>1455</td> <td>1800</td> <td>2145</td> <td>2490</td> <td>2835</td> <td>3180</td> </tr> <tr> <td>심판(당사자계)</td> <td>7</td> <td>13</td> <td>19</td> <td>25</td> <td>34</td> <td>43</td> <td>52</td> <td>61</td> <td>70</td> </tr> <tr> <td>편익(백만원)</td> <td>161</td> <td>316</td> <td>464</td> <td>606</td> <td>750</td> <td>893</td> <td>1036</td> <td>1180</td> <td>1323</td> </tr> </tbody> </table>		'18	'19	'20	'21	'22	'23	'24	'25	'26	특허·실용신안	1378	2703	3975	5194	6413	7632	8851	10070	11289	상표	910	1785	2625	3430	4235	5040	5845	6650	7455	디자인	390	765	1110	1455	1800	2145	2490	2835	3180	심판(당사자계)	7	13	19	25	34	43	52	61	70	편익(백만원)	161	316	464	606	750	893	1036	1180	1323
	'18	'19	'20	'21	'22	'23	'24	'25	'26																																																				
특허·실용신안	1378	2703	3975	5194	6413	7632	8851	10070	11289																																																				
상표	910	1785	2625	3430	4235	5040	5845	6650	7455																																																				
디자인	390	765	1110	1455	1800	2145	2490	2835	3180																																																				
심판(당사자계)	7	13	19	25	34	43	52	61	70																																																				
편익(백만원)	161	316	464	606	750	893	1036	1180	1323																																																				

(정성)제목	전문화된 변리서비스의 혜택
분석	특허분쟁의 사전 대비 및 다양한 변리서비스의 활성화

근거설명	<p>변리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리사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은 변리사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고 특허전략 수립이 용이해져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 가능</p> <p>또한, 다양한 실무 경력을 가진 변리사가 증가하여 출원인에게 기술거래,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변리서비스의 제공이 현재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p>
------	--

③ 정부 :

□ 비용 : 1,432.34백만

(정량)제목	행정 인력
금액	1,336,923,064
산식	3명 * 56,040,000(원)
(정량)제목	실무수습 운영비
금액	95,426,343
산식	실무수습 관련 사무실 운영비(12백만원)
근거설명	<p>1 행정인력 2015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금액(467만원)을 고려하여, 연간 인력 1인의 연봉을 5,604만원(467만원*12개월)으로 설정</p> <p>2. 실무수습 운영비 교육장소 섭외, 기타 운영비 등 (12백만원, 매년)</p> <p>※ 강사료, 교재비 등은 실무수습 교육생의 교육비에서 총당</p> <p>[참고] 변리사회 2016년 실무수습지출안(집합2개월) (단위:천원)</p>

세부항목		금 액	비 고
집합 교육	임대료	55,000	서울대학교 (실습과정확대)
	강사료	68,000	전년도 실비 수준
	교재비	28,000	전년도 실비 수준
	워크숍	50,000	워크숍/유관기관 견학
	기 타	11,400	학습평가, 교육생 간담회, 사무용품, 행사준비(수업조교)
사무소수습		15,800	강의안 검수, 회의비 실무역량 평가비 등
실무 전문가과정		-	강사료 6,680 임차료 등 13,520
실무수습 수료식		10,000	2017년 4월(예정)
단기용역비		8,000	수업 조교, 사무소수습관리 조교
인 건 비		60,300	연수원 전담인력
합 계		306,500	(특허청 예산지원금 6천만원범위에서 운영)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

편익 : 600백만

(정량)제목	외부민간교육기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금액	600,000,000
산식	1년간 변리사회위탁사업 예산지원금(60)

근거설명	기존 변리사회에 위탁했던 실무수습에 대한 예산지원(60백만원)이 불필요
------	---

(정성)제목	
--------	--

분석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다수의 행정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 실무수습을 확대 운영하고 실무수습 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행정적·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특허청은 변리사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과거 변리사 실무수습을 운영(~'11)해왔으므로 기술적 집행 가능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그간 변호사는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변리사법 개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

- 변호사라면 누구나 실무수습을 신청·이수하여 변리사 자격의 취득이 가능하고,
-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실무수습을 구성하여 변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 취지에 부합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변리사 실무수습은 비용 대비 편익이 크므로 선택 가능한 대안임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정부) 변리사 전문성 확보

- 변리사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 및 변리사 자격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산업재산권 업무경험을 갖춘 변리사 양성이 가능

(변리사) 변리사로서의 전문성 강화

- 실무수습을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하여 변리사로서 전문성 강화

(출원인) 변리사 자격에 대한 신뢰 확보

-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리사가 변리사로서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일반 출원인의 신뢰성 확보 가능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해당 사항 없음